

공

고

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85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2월 7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(2698)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(주)알디이엔지니어링(조성아), ②삼송기업(주)(김원태),
③(주)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(조영수,강예석),
④유정식, ⑤박재성

나. 전화번호: ①02-392-3066, ②02-393-3050, ③031-560-5598

2. 명칭 : 라이닝재 보호필름 제거장치와 견인안내장치 및 악취정화부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

3. 내용 요약

<분야>

토목 > 상.하수도 >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

<기술의 내용>

신청기술은 견인 시 자재차량에 설치하는 보호필름 제거장치에 칼날부를 이용해 라이닝재 보호필름을 절단하고, 필름회수장치를 통해 절단된 필름을 회수하여 견인 시 라이닝재 보호필름이 제거된 상태로 하수관에 삽입시키며, 하수관로 하부에 견인안내선 및 상부 이송와이어를 설치하고 라이닝재 견인 안내부를 이송와이어와 고리로 연결하여 보호필름이 제거된 라이닝재가 바닥에 마찰되지 않는 높이(관경 기준 1/3~1/2정도 높이)로 고정시킨 후 연결된 고리를 견인한다.

<범위>

라이닝재 보호필름 제거장치와 견인안내장치를 이용하여 견인시 발생하는 라이닝재에 손상을 막고 하수관로와 접착력을 높임과 동시에 수냉식 악취정화부 설치로 경화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(관경 : 200mm ~ 1,500mm)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5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